

의안번호	2206168
의 퇴 인	임호선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0.
추 계 번호	24F565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8.3억원, 2030년 37.5억원 등 2026~2030년까지 5년간 총 160.7억원(연평균 32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(제62조의2 신설)	-8.3	-34.3	-44.2	-36.4	-37.5	-160.7	-32.1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 발생 가능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2조의2 (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- 감면내용: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시 그 지역인재에 지급한 인건비(채용한 날부터 2년)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공제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2조의2 (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
 -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세액감면은 2025년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적용된다고 전제하며 감면효과는 신고시점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발생
- 2025년은 부칙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을 7월 1일로 가정
 - 개정안 부칙은 이 법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
 - 2025년 7월 1일 채용된 지역인재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2025년 6개월분, 2026년 1년분, 2027년 6개월분을 법인세에서 공제
 - 2026년 이후는 1월 1일부터 지역인재 채용이 되는 것으로 가정
-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에 따른 법인세 공제의 세수효과는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인원이 2023년 지역인재 신규채용 인원을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에 따라 추계
 - 2023년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현황은 774명으로 지역인재 채용률은 40.6%임
 - 이전공공기관은 2023년 총 1,908명 신규채용을 실시, 이중 40.6%인 774명을 지역인재로 신규채용
 - 2023년 지역인재 신규채용 규모 774명이 향후 신규채용인원의 35% 이상 규모로 가정

[표 2] 2023년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인원 및 비율

(단위: 명, %)

	부산	대구	광주전남	울산	강원	충북
지역인재 채용인원	70	62	141	42	145	8
지역인재 채용률	36.0	44.6	39.4	37.8	50.6	44.4

	전북	경북	경남	제주	충남	세종	전국
지역인재 채용인원	32	140	91	7	32	4	774
지역인재 채용률	61.5	35.5	37.7	36.8	38.0	33.3	40.6

주: 국토부 통계자료(2024 공공부문 통합인사 연차보고서)로 대전시와 기술보증기금은 제외(혁신도시법 제정 이전에 이전)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□ (제도 개요)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(안 제62조의2 신설)

- 이전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35%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 시 그 지역인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%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
 - 인건비는 채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인건비만 해당
-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지방대학육성법)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함(제13조제2항)
 - 「혁신도시법」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8년 18%에서 매년 3%p 상향 설정되어 2022년도 이후 30%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채용
 - 2024년 「지방대학육성법」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35%로 상향 설정

[표 3]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

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4년
18%	21%	24%	27%	30%	35%

주: 혁신도시법 시행령 및 2024년은 지방대학육성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35%로 상향 설정

(2) 추계방법

□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 따른 법인세 공제는 2023년 지역인재 채용인원에 신입직원 임금액 총액의 30%를 공제액으로 계산

- 이전공공기관의 법인세 공제액 = 지역인재 채용인원¹⁾ × 평균 신입연봉액²⁾ × 30% ×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³⁾

1)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2023년 실적 774명으로 가정

2) 평균 신입연봉액은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일반정규직의 신입사원 평균연봉액 38,18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향후 평균 초임은 공공기관 임금상승률(24년 2.5%, 25년 3.0% 예정)을 적용하며 입사 후 호봉인상에 따른 임금상승은 고려하지 않음

3)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(총부담세액/과세표준)은 2023년 기준 17.8% 적용

- 부칙의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의해 2025년은 7월 1일 채용을 가정, 2026년 법인세 공제는 2025년에 지급된 6개월분의 지역인재 인건비에 대해 적용

[표 4]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5년간 법인세 공제 발생액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2025년 채용 (7월 1일 채용 가정)	8.3	17.2	8.8		
2026년 채용		17.2	17.7		
2027년 채용			17.7	18.2	
2028년 채용				18.2	18.8
2029년 채용					18.8
계	8.3	34.3	44.2	36.4	37.5

주: 부칙에 따라 2025년은 7월 1일 기준 채용 시부터 적용을 가정, 2026년 이후는 1월 1일 채용을 가정

(3) 추계결과

-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8.3억원, 2030년 37.5억원 등 2026~2030년까지 5년간 총 160.7억원(연평균 32.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30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(제62조의2 신설)	-8.3	-34.3	-44.2	-36.4	-37.5	-160.7	-32.1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변동 발생 가능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신미정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미정	02-6788-4837	mjshin@assembly.go.kr